

시 흥 정 왕      공 공 주 택 지 구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2. 12.



국토교통부

#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본 계획지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한 도시재생 선도지역(공기업 투자사업 대상지)으로 장기간 방치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를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시경관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계획지구는 수도권전철 4호선 및 수인분당선 정왕역, 평택~시흥고속도로, 국도77호선과 인접하고 신안산선(경기도 안산, 시흥~여의도)이 예정 중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해당하며,
- 주변으로 조성된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안산신길, 시흥장현, 시흥거모,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등이 인접하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조성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성 및 주거정책 수행·달성으로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함

## 1.2 계획의 개요

### 1.2.1 계획의 내용

- 계 획 명 : 시흥정왕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
- 면 적 : 102,232㎡(개발제한구역 99,272㎡, 97.1%)
- 계 획 인 구 : 1,908인(859세대)
- 사 업 기 간 : 2022년 ~ 2026년
- 사 업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 인 기 관 : 국토교통부
- 협 의 기 관 : 환경부

### 1.2.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의 2.개발 기본계획 중 [가.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 지구의 지정[지정면적 : 102,232㎡(개발제한구역 99,272㎡, 97.1%)]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	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주)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법제상 명칭은 「공공주택 특별법」임  
 2.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2조 제4항에 의거 지구계획 승인 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사항으로, 향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3에 따라 지구계획 수립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함으로써 개발제한 구역해제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제외됨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관련 [별표 2]

### 1.2.3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의거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289호)」에 따라 작성함

### 1.2.4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가. 추진경위

- 2021. 11. :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LH→국토부)
- 2022. 03. :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고시
- 2022. 04. : 관계기관 사전협의
- 2022. 06. :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제안(LH→국토부)
- 2022. 08.12.~08.19.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평가준비서 사전 검토 의견수렴)
- 2022. 09.28.~10.07.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서면)

#### 나. 향후계획

- 2022. 12.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예정)
- 2022. 12.~2023. 0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예정)





1.2.5 계획지구 현황사진



(그림 1-3) 계획지구 현황사진(1)

시흥정왕 공공주택지구



③ 도시농업 체험장 밭글밭

④ 계획지구 남측

⑤ 정왕신길로 및 주유소

⑥ 충현교회

⑦ 주유소

⑧ 마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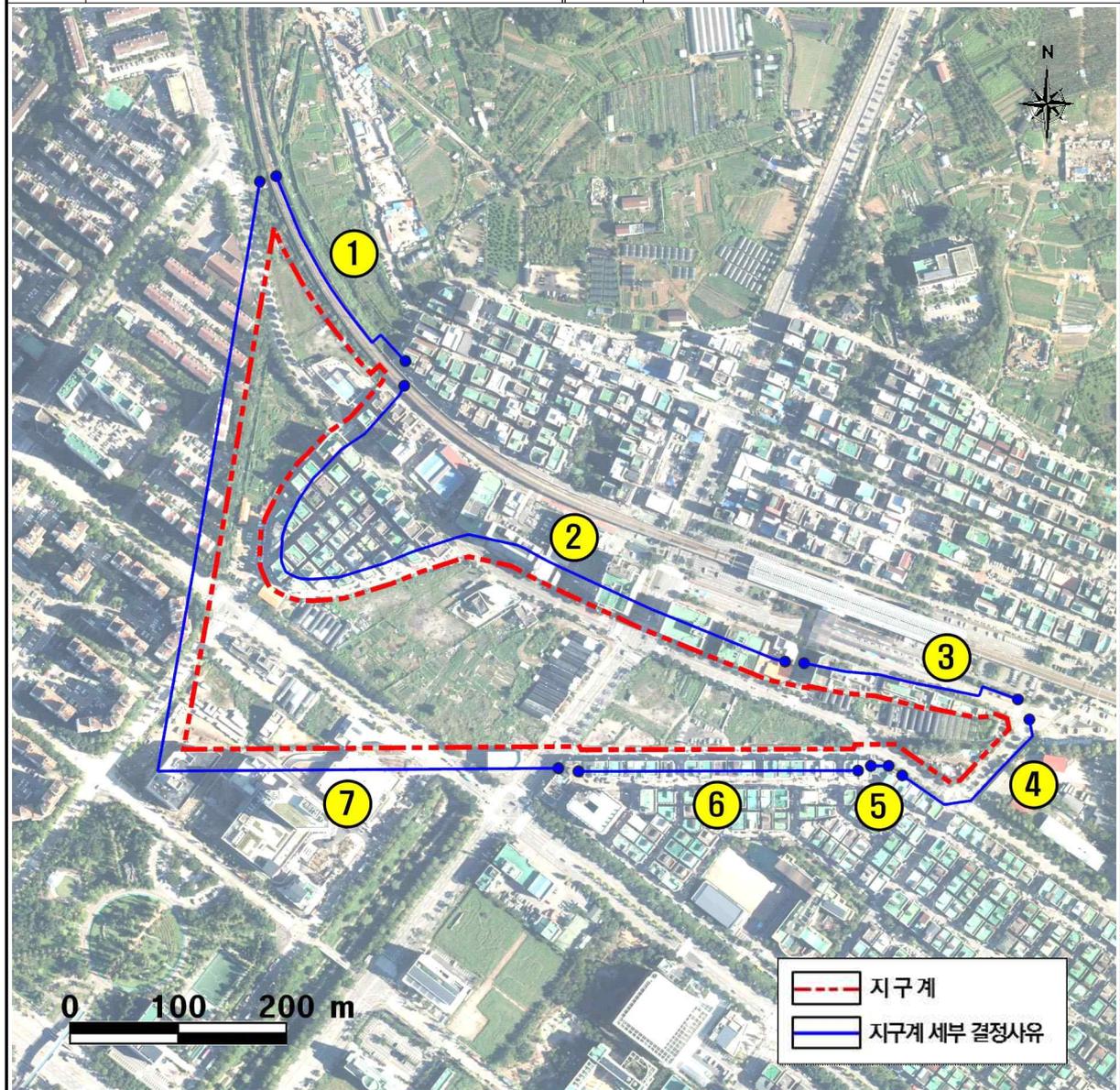
(그림 1-4) 계획지구 현황사진(2)

### 1.2.5 지구계 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개발제한구역, 철도용지, 도로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구경계 설정

<표 1-2> 계획지구 지구계 결정 사유도

연번	지구계 결정사유	연번	지구계 결정사유
①	철도용지 경계	⑤	개발제한구역 경계
②	개발제한구역 경계	⑥	도시계획시설(도로) 경계
③	도로용지 경계	⑦	개발제한구역 경계
④	도시계획시설(도로)경계	-	-



## 제 2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 주관행정기관 : 국토교통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 9인(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 심의방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전검토 및 서면심의**
  - 사전검토
  - 심의(서면)
    - 서면심의 사유 : 사전검토 결과 서면심의 의견이 과반수 이상으로 서면심의 진행
- 결정사항 : 대상지역의 설정,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등

####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2. 토지이용구상안 / 3. 대안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2.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2.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본 계획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참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함

< 표 2-1 > 평가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 계획지구를 포함한 조사지역의 현지 및 문헌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경계)에서 100~300m 이내 *분류군별 조사 범위는 “주” 참조	○ 공사 시 ○ 운영 시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깎기·쌓기로 인한 지형변화 ○ 강우 시 토사유출 및 비옥토 유실	• 계획지구	○ 공사 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수립 및 시행에 따른 경관변화 발생(토지이용변화,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 입지 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 시	
	수환경의 보전	○ 공사 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투입인원으로 인한 오수발생 ○ 운영 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 연안오염총량 검토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 공사 시 ○ 운영 시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합성	기 상	○ 계획지구 및 인근 지역 기상특성 검토 ○ 타 항목 기초자료 활용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인근 기상관측소)	○ 공사 시 ○ 운영 시
		대기질	○ 공사 시 토공작업 및 투입장비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등 대기질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의 위치적 특성상 500m 이내에 기존 주거지 등 주요 정온시설이 위치함 ○ 운영 시 난방연료 및 주변 차량운행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경계 500m 이내	○ 공사 시 ○ 운영 시
		온실 가스	○ 계획시행으로 인한 공사장비 가동 및 연료사용,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 가스 발생 예상	• 계획지구	○ 공사 시 ○ 운영 시
		악취	○ 운영 시 계획지구 2km 이내 위치한 반월특수(시화) 국가산업단지 입지에 따른 계획지구 내 악취 영향 예상지역	• 계획지구(반월특수(시화)국가산업단지 포함)	○ 운영 시

< 표 2-1 > 평가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 계속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생활 환경의 안정성	토양	○ 공사 시 폐유발생(건설장비),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예상	• 계획지구	○ 공사 시
	소음 · 진동	○ 공사 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소음·진동 발생 및 영향 예상지역 ○ 계획지구의 위치적 특성상 지구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기존 주거지 및 수도권전철 4호선 등이 위치함 ○ 운영 시 철도,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발생 및 영향예상지역	• 계획지구 경계 300m 이내	○ 공사 시 ○ 운영 시
	위생· 공중 보건	○ 운영 시 계획지구 2km 이내 위치한 반월특수(시화) 국가산업단지 입지에 따른 계획지구 내 위생·공중보건 영향 예상지역	• 계획지구	○ 운영 시
	전파 장해	○ 운영 시 열차운행에 따른 전파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 시
	일조 장해	○ 공공주택 등 신축 건물 입지에 따른 일조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 시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 계획지구 주변 환경기초시설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 시 ○ 운영 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공사 시 지장물 철거, 훼손수목, 공사장비 및 공사인부 운용 등으로 인한 폐유·폐기물 등 발생 ○ 운영 시 시설 이용에 따른 폐기물 발생	• 계획지구	○ 공사 시 ○ 운영 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수반되는 지역	• 계획지구	○ 공사 시 ○ 운영 시
	인구·주거	○ 공사 시 및 운영 시 인구·주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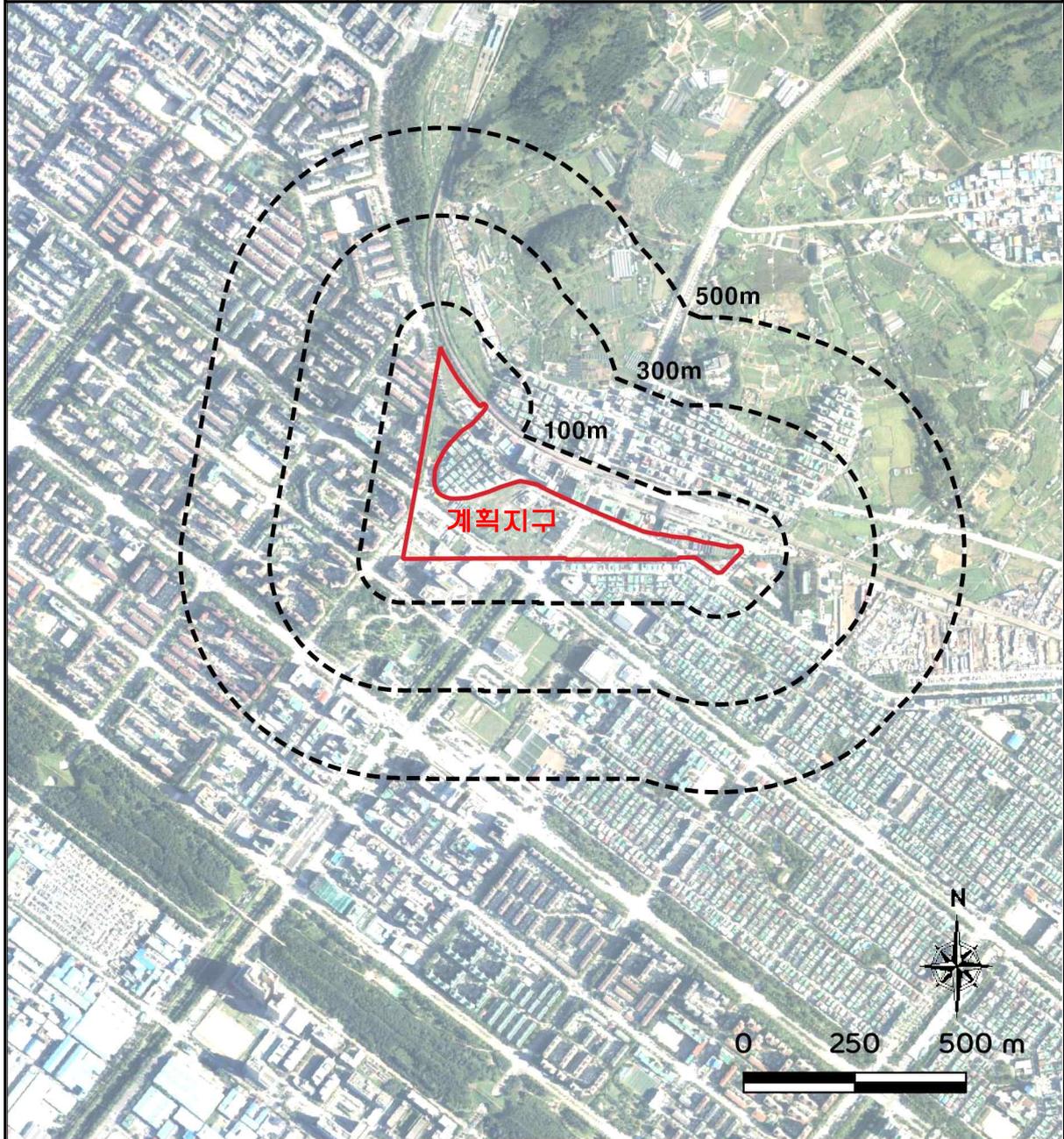
주) 동·식물상 조사범위 : 「환경영향평가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의 자연생태환경조사 가이드라인」 참조 (면사업 기준)

- 현지조사 범위 : 300m 이내(포유류, 조류), 100m 이내(식물상,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하천상·하류 100m 범위(어류, 담수무척추동물)
- 광역조사 범위 : 계획지구를 중심으로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 기본단위인 9개의 격자를 포함한 지역

자료 :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2020.12.22, 환경부  
 2.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01, 환경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

## 시흥정왕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					
계획지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계획지구 경계 100~300m	계획지구 경계 300m	계획지구 경계 50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li> <li>• 환경기준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li> <li>- 악취</li> <li>- 토양</li> <li>- 위생·공중보건</li> </ul> </li> <li>•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li> <li>• 환경친화적 토지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의 적정성</li> <li>• 주변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li> <li>• 환경기준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li> <li>- 전파장애</li> <li>- 일조장애</li> </ul> </li> <li>•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li> <li>• 인구·주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환경의 보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물상</li> <li>- 식생</li> <li>- 육상 동물상</li> <li>- 육수 동물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기준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진동</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기준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질</li> </ul> </li> </ul>



( 그림 2-1 )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 2.2.2 대안의 설정

### 가. 대안의 종류 및 선정

- 본 계획에 대한 대안의 설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2017. 12,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89호」에 제시된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대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계획비교, 수단·방법, 수요·공급, 입지, 시기·순서, 기타 등 6개의 종류로 구분함
- 대안이란, 환경적 목표와 기준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에 대한 여러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함
- 본 계획은 시흥정왕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목적으로 하는 바, 본 계획의 경우 계획을 수립할 경우(Action)와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에 대한 【계획비교】 측면에서의 대안, 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요·공급】 측면,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입지】 측면에서의 대안을 설정하여 각 대안별 비교·검토를 하였음
- 대안의 종류 및 선정과 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에 따라 대안의 종류 중 수요·공급과 관련 토지이용 구상(안) 3개의 대안을 설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제시하고 평가 지표를 설정·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할 계획임

< 표 2-2 >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 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
계획 비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적용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적용
입지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적용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89호(2020.12.22.)

< 표 2-3 > 대안의 종류 선정

대안종류	설정기준	내 용	
계획비교	계획수립 여부	대안 1안	○ 행정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Action)
		대안 2안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
입지비교	지구계 조정	대안 1안	○ 주변 연계성 확보 및 토지이용 효율 극대화
		대안 2안	○ 계획지구 경계 조정
수요·공급	토지이용 구상안 비교	대안 1안	○ 토지이용 구상안에 따른 비교·검토
		대안 2안	
		대안 3안	

나. 대안의 비교·분석

1) 계획 비교에 따른 대안별 검토

- 행정계획 수립(Action) 및 미 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표 2-4 > 계획비교(행정계획 수립 및 미 수립)

평가영역	행정계획 수립시(Action)	행정계획 미 수립시(No Action)
토지이용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인 개발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며,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한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li> <li>○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의 주거 환경 안정 도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지구는 약 97%가 개발제한 구역에 해당하며, 무분별한 토지이용시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li> </ul>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저촉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저촉하지 않음</li> </ul>
생태계 훼손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구 내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 관리지역은 없음</li> <li>○ 계획지구 내 GB환경성평가는 3~5등급 지역임</li> <li>○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생태계 훼손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토록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일부 지역의 경우 경작지,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li> </ul>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깎기 및 쌓기 등 불가피한 지형변화가 발생되나, 저감대책으로 훼손 최소화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구는 평탄한 지형으로 대부분 기개발지로 현 상태를 유지하여도 지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li> </ul>
쾌적한 생활 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함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li> </ul>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시행에 따른 건축물 신축에 따른 경관 변화가 다소 예상되므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 수립이 요구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구 전체면적의 약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 상태를 유지하여도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li> <li>○ 개별적 토지 활용시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에 따라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발생 가능</li> </ul>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오염 발생이 예상되나,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대책 수립으로 환경기준 유지 및 달성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li> <li>○ 개별적 토지 활용시 점 및 비점오염원 증가</li> </ul>
선 정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시행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심 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정부 주택정책 방향에 부흥하고,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 도시경관 개선 및 쾌적한 주거생활 조성이 가능한 대안1을 선정함</li> </ul>	
선정	◎	

2) 수요·공급에 따른 비교·검토

- 【수요·공급】에 따른 토지이용 구상(안)에 대해 비교·검토를 실시하였으며, 대안별 비교·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대안의 종류 및 선정과 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에 따라 대안의 종류 중 수요·공급 관련 토지이용 구상(안) 3개의 대안을 설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제시하고 평가 지표를 설정·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할 계획임

< 표 2-5 > 토지이용계획 구상(안) 비교

구분	대안1						대안2					
토지이용구상												
계획표	구분	합계	주택건설 용지	복합 용지	공원녹지 용지	기타시설 용지	구분	합계	주택건설 용지	도시지원 시설용지	공원녹지 용지	기타시설 용지
	면적 (㎡)	102,232	40,000	4,800	17,400	40,032	면적 (㎡)	102,232	42,700	8,800	16,500	34,232
	구성비 (%)	100.0	39.1	4.7	17.0	39.2	구성비 (%)	100.0	41.8	8.6	16.1	33.5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왕역(수도권전철 4호선, 수인분당선)과 기반시설(병원, 공공서비스)을 연계한 자족·편의기능 도입</li> <li>○ 단독주택용지 일조권을 고려한 공원 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형 용지를 공원녹지로 활용</li> </ul>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세권 복합용지 배치로 주민생활 편의성 증대</li> <li>○ 정왕역 연계 및 통행량을 고려한 주차장 확보 및 환승 활성화</li> <li>○ 단독주택용지 일조권을 고려한 공원 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세권 인접 공동주택 배치로 보행 안전성 향상</li> <li>○ 도시지원시설용지 확대로 자족기능 강화</li> <li>○ 부정형 용지를 공원녹지 구상에 따른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형 공동주택용지</li> <li>○ 편중된 복합용지 배치로 보행 이용권이 제한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형 공동주택용지</li> <li>○ 기존 단독주택용지 동남측에 공동주택용지 배치로 일조권 저해 우려</li> <li>○ 남측 경계선에 유동인구 이용이 많은 도시지원시설 배치로 접근성 및 동선 복잡</li> </ul>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이용 효율성, 인접 단독주택지 일조권 등을 고려하여 대안1을 선정함</li> </ul>											
선정	◎											

주) 기타시설용지는 주차장, 보행자전용도로, 도로 등을 포함

3) 입지에 대한 비교 · 검토

- 본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계획 및 인근 지역의 지구계, 토지이용현황, 관계기관 검토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적,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구상안 수립을 위해 계획지구 입지에 따른 지구계에 대하여 2개의 대안을 비교 · 검토하였음

< 표 2-6 > 입지에 대한 대안별 비교표

구분	대안1			대안2		
위치						
규모	구분	면적(㎡)	구성비(%)	구분	면적(㎡)	구성비(%)
	계획규모	102,232	100.0	계획규모	126,763	100.0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경계 설정으로 단절토지 해소</li> <li>○ 기존 도심과 연계한 체계적, 계획적 개발 가능</li> <li>○ 장기 방치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의 체계적 개발 가능</li> <li>○ 부정형 용지에 대한 토지이용효율성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도심과 연계한 체계적, 계획적 개발 가능</li> <li>○ 장기 방치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의 체계적 개발 가능</li> <li>○ 역세권 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부담 감소</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변 소음, 진동 영향 초래 우려로 시설 입지 제약</li> <li>○ 저층단독주택용지 인접으로 고밀개발 사업 방식과 상충</li> <li>○ 마유로, 역전로, 정왕신길로 등 기존 교통축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 제약</li> <li>○ 도시재생 활성화구역과 계획지구 부정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구 동측 구역계 부정형, 철도로 인하여 단지 분절</li> <li>○ 저층단독주택용지 인접으로 고밀개발 사업 방식과 상충</li> <li>○ 철도변 소음, 진동 영향 초래 우려로 시설 입지 제약</li> <li>○ 개발제한구역 편입 면적 증가</li> <li>○ 마유로, 역전로, 정왕신길로, 철도부지 등 기존 교통축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 제약</li> </ul>		
선정 사유	○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해소 및 토지효율성을 고려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이 가능한 대안1을 선정함					
선정	◎					

2.2.3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가. 평가항목의 설정

- 본 계획과 관련하여 평가해야 하는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규정된 개발기본계획 세부평가항목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2017. 12, 환경부)” 등을 참고하였으며, 계획 및 주변 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함

< 표 2-7 > 평가항목의 설정

평가항목		선정 사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본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적정성 검토 필요 ○ 환경관계법상의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및 입지규제 저촉여부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지구계 및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 서식지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동·식물상의 변화 예상 ○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파악 및 보호종 출현 시 보호대책 수립 필요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 수립에 따른 지형 및 생태축 변화 예상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보전지역 분포 여부 ○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변화 예상 등
		수 환경의 보전	○ 공사 시 토사유출, 운영 시 오수발생 및 비점오염원 발생에 따른 저감방안 수립 필요 ○ 수 환경 관련 보호지역 영향 여부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의 수리·수문 현황 및 치수 안정성 부합여부 검토 필요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 타 항목의 기초자료로 활용(기상) ○ 계획 수립에 따른 대기, 악취, 토양, 소음·진동, 위생· 공중보건 등 영향 검토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공사 시 및 운영 시 발생 오수 및 폐기물의 환경기초 시설과 연계처리 검토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 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수립 필요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예상 ○ 계획수립에 따른 인구 및 주거 변화 예상	

주)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21-300호, '21.12.30)」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할 계획임

**나.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토대로 선정한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음

**< 표 2-8 >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구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자연환경의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① 조사내용 ○ 식물상 현황 -식물분포 및 식생 -습지분포 등 ○ 동물상 현황 -분류군별 종 분포 및 서식현황 ○ 육수 생물상 현황 -인접 하천의 분류군별 종 분포 및 서식 현황 ○ 특이할만한 종 분포 및 서식 현황 ○ 생태자연도 및 생태계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경계 300m 이내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계획지구 경계 300m 이내 ○ 조사횟수 : 2회	○ 식물상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과 개체에 대한 영향, 훼손 수목발생 및 예측 ○ 동물상 -분류군별 계획시행으로 인한 서식처 훼손 및 간섭에 따른 영향예측 및 평가 ○ 육수 생물상 -하천점유 및 토사 유출에 따른 영향, 수계의 연속성 단절이나 간섭에 따른 영향 ○ 기타,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그 서식환경 파악과 계획시행으로 이들 중에 미치는 영향과 그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	○ 계획지구(경계)에서 100-300m 이내 *분류군별 조사범위는 “주)” 참조
	지형 및 생태축의보전 ① 조사내용 ○ 지형현황 및 분석, 주요 산맥 분포현황, 지질 특성 ○ 특이지형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토지이용구상 및 입지현황을 고려하여 생태축 및 산림축 단절여부 검토	○ 계획지구
	주변자연경관에 미치는영향 ① 조사내용 ○ 경관 우수지역 현황 ○ 경관 훼손 예상지역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현지조사를 통한 주요 조망점 선정(근경·중경·원경)	○ 계획내용을 토대로 경관변화 여부 및 경관변화 정도예측 ○ 경관변화 최소화 대책 수립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표 2-8 >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계속

구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자 연 환경의 보 전	수 환경의 보 전	① 조사내용 ○ 하천, 지하수에 대한 환경기준 설정항목의 현황농도 ○ 인근 수계에 미치는 영향	○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상 ○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 연안오염총량 검토 ○ 운영 시 급수 및 우·오수 처리계획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지표수 3개 지점 × 2회 ○ 지하수 2개 지점 × 2회		
생 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 합 성	기상 ① 조사내용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기상 현황	○ 계획지구 주변기상대 최근 10년 기상자료 분석 및 영향 검토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인근 기상관측소)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인근 기상관측소)		
		④ 조사지점 ○ 3개 지점 × 2회		
대 기 질	① 조사내용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 현황	○ 계획시행 시 영향예상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예측하여 대기환경기준과 비교·평가	○ 계획지구 경계 500m 이내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경계 500m 이내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3개 지점 × 2회				
온실 가스	① 조사내용 ○ 운영 시 계획지구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조사	○ 공사 시 장비가동 및 운영 시 연료 사용 등에 따른 온실 가스 영향 검토	○ 계획지구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④ 조사지점 ○ 3개 지점 × 2회				
약취	① 조사내용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약취 현황	○ 운영 시 계획지구 2km 이내에 위치한 반월특수(시화) 국가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계획 지구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계획지구(반월 특수(시화)국가 산업단지포함)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3개 지점 × 2회				

< 표 2-8 >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계속

구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토양 ① 조사내용 ○ 토양오염우려기준 설정항목의 토양오염도 현황 파악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3개 지점 × 2회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양 오염 영향예측 ○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 여부 파악 및 대책 수립	○ 계획지구
		소음·진동 ① 조사내용 ○ 소음·진동 현황 및 주요 발생원조사 ○ 정온시설을 포함한 계획지구 주변 시설물 분포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경계 300m 이내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소음·진동 : 4지점 × 2회 ○ 철도소음·진동 : 3지점 × 2회	○ 소음·진동예측식을 이용하여 계획시행 시 소음진동 영향을 예측하여 소음환경기준 등과 비교·평가	○ 계획지구 경계 300m 이내
		위생·공중보건 ① 조사내용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유해 대기오염물질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3개 지점 × 2회	○ 운영 시 계획지구 2km 이내에 위치한 반월특수(시화) 국가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계획 지구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계획지구
		전과장해 ① 조사내용 ○ 계획지구 주변 전과장해 유발시설물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철도인접구간 전과장해 영향 예측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표 2-8 >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계속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생 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일조 장해	① 조사내용 ○ 계획지구 주변 고층건물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계획지구 내 일조영향 예측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환 경 기 초 시 설의 적 정 성	① 조사내용 ○ 환경기초시설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조사	○ 오·폐수 및 폐기물 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계획지구 주변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자 원  · 에 너 지 순 환의 효 율 성	① 조사내용 ○ 자원 및 에너지순환 관련 법규정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 계획시행으로 발생하는 공 중별, 종류별 발생하는 폐 기물에 대한 처리방안 ○ 자원 및 에너지순환 관련 규정 적용 및 준수 여부 검토	○ 계획지구
사 회  · 경 제 환 경 과 의 조 화 성	환 경 친 화 적 토 지 이 용	①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편입용지 및 지장물 파악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계획시행 전·후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파악	○ 계획지구
	인 구  · 주 거	① 조사내용 ○ 인구 및 주거, 장래 변화예측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 관련 계획에 따른 유입인구 변화 예측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주) 동·식물상 조사범위 : 「환경영향평가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의 자연생태환경조사 가이드라인」 참조  
(면사업 기준)  
- 현지조사 범위 : 300m 이내(포유류, 조류), 100m 이내(식물상,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하천  
상·하류 100m 범위(어류, 담수무척추동물)  
- 광역조사 범위 : 계획지구를 중심으로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 기본단위인 9개의 격자를 포함한 지역

**2.2.4 환경질 현황 조사계획**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계획시행 전·후 환경변화) 및 저감방향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지구 내 및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지역,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환경질 측정지점을 선정하였음
- 환경질 조사항목 : 대기질, 악취, 지표수질, 지하수질, 토양, 소음·진동(환경, 철도) 등
- 동·식물상 조사는 「환경영향평가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의 자연생태환경조사 가이드라인(면사업 기준)」에 의거하여 사업지구(경계)에서 100~300m 이내를 조사할 계획임
- 각 항목별 공정시험기준에 제시된 조사 및 분석 방법에 준하여 실시할 계획임

**< 표 2-9 > 환경질 현황 조사계획**

구 분	조사항목	항목수 (개)	조사지점 (지점)	조사횟수 (회)
지표수질	유량,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량(DO),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량(SS), 총인(T-P), 총대장균군수, 카드뮴(Cd), 비소(As), 시안(CN), 수은(Hg),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납(Pb), 6가크롬(Cr <sup>6+</sup> ),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17	3	2
지하수질	수소이온농도(pH), 과망간산칼륨 소비량(KMnO <sub>4</sub> 소비량), 암모니아성 질소(NH <sub>3</sub> -N), 질산성 질소(NO <sub>3</sub> -N), 황산이온(SO <sub>4</sub> <sup>2-</sup> ), 철(Fe), 아연(Zn), 염소이온(Cl <sup>-</sup> ), 페놀, 구리(Cu), 망간(Mn), 비소(As), 수은(Hg), 크롬(Cr), 카드뮴(Cd), 납(Pb), 알루미늄(Al), 맛, 냄새, 색도, 탁도, 증발잔류물(TS), 경도,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25	2	2
대기질	아황산가스(SO <sub>2</sub> ),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 <sub>2</sub>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 <sub>3</sub> ), 납(Pb), 벤젠(C <sub>6</sub> H <sub>6</sub> )	8	3	2
악취	복합악취(공기관능회석법)	1	3	2
토양	카드뮴(Cd), 구리(Cu), 비소(As), 수은(Hg), 납(Pb), 6가크롬(Cr <sup>6+</sup> ), 아연(Zn), 니켈(Ni), 불소(F),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시안(CN), 페놀(Phenol),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크실렌(Xylene),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22	3	2
소음·진동	환경소음·진동	2	4	2
	철도소음·진동	2	3	2
위생·공중보건	스티렌(C <sub>8</sub> H <sub>8</sub> ), 시안화수소(HCN), 염화수소(HCl), 암모니아(NH <sub>3</sub> ), 황화수소(H <sub>2</sub> S), 수은(Hg), 포름알데히드(HCHO), 니켈(Ni), 6가크롬(Cr <sup>6+</sup> ), 염화비닐(CH <sub>2</sub> ), 카드뮴(Cd), 비소(As), 벤젠(C <sub>6</sub> H <sub>6</sub> )	13	3	2

주) 위생·공중보건의 벤젠 항목 결과는 대기질 현황조사자료 이용

시흥정왕 공공주택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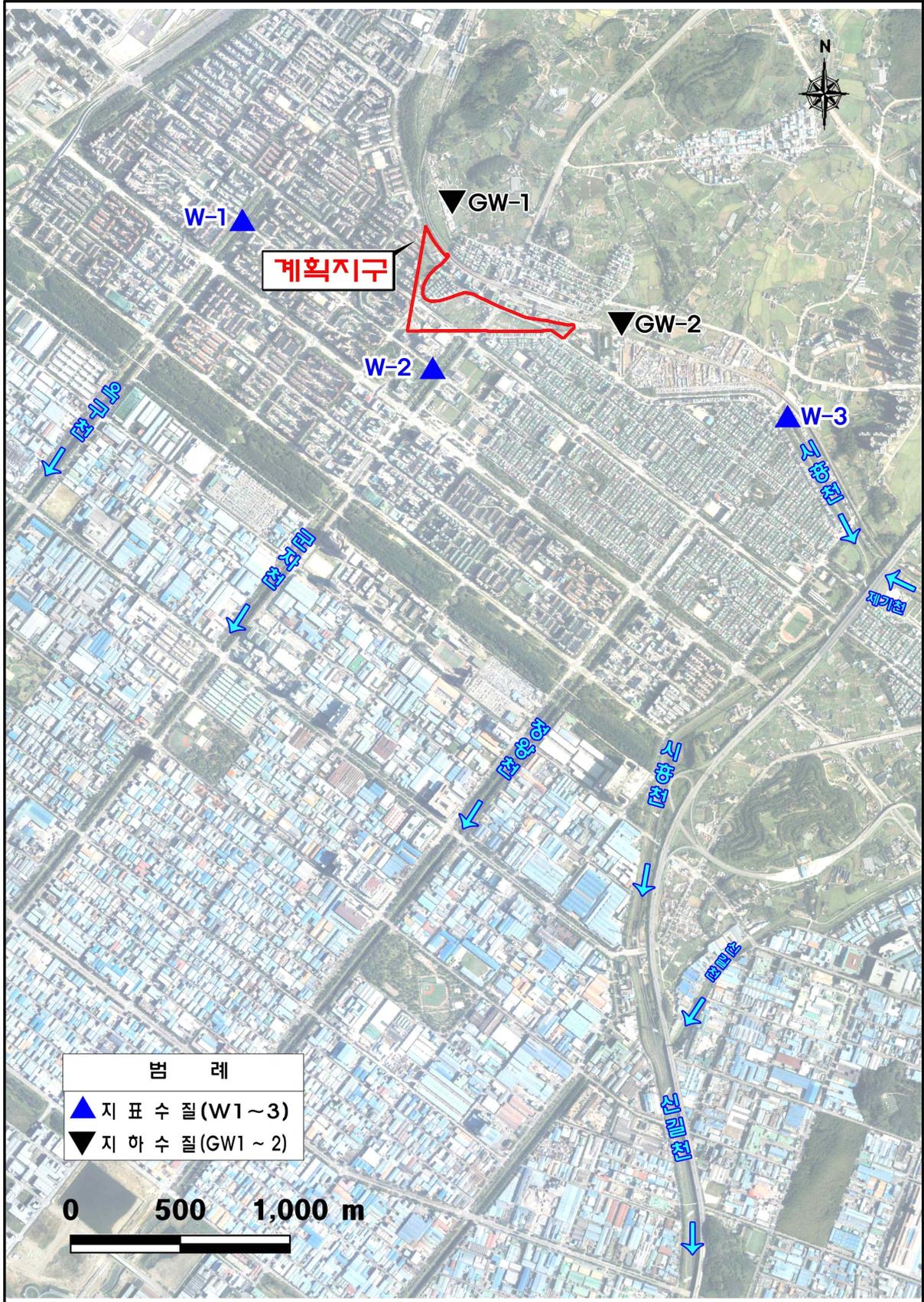
< 표 2-10 > 동식물상 조사항목 및 지점

구분	조사지점	선정사유	비고
동·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지조사 범위 : 300m 이내(포유류, 조류), 100m 이내(식물상,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하천 상·하류 100m 범위(어류, 담수무척추동물)</li> <li>광역조사 범위 : 계획지구를 중심으로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 기본단위인 9개의 격자를 포함한 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지구(경계)에서 100~300m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회</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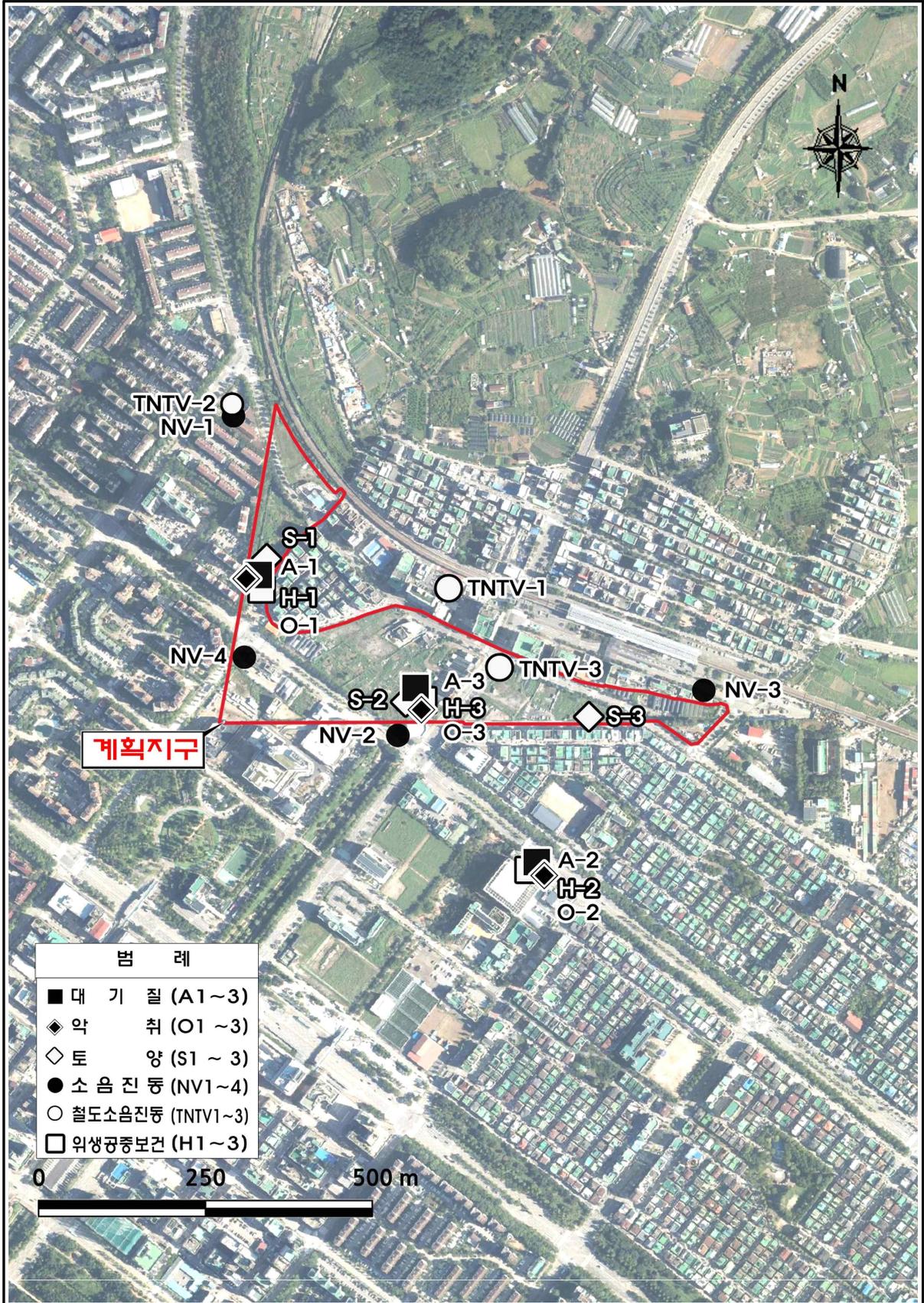
< 표 2-11 > 조사지점 선정사유

구분	조사지점	선정사유	비고	
지표수질	W - 1	시흥시 정왕동 1901(영남5차맞은편) 인근	서측 지구 수계 하류	옥구천
	W - 2	시흥시 정왕동 1918(군자천보도2교) 인근	남측 지구 수계 하류	군자천
	W - 3	시흥시 정왕동 2154(외곽4교) 인근	남동측 지구 수계 하류	시흥천
지하수질	GW - 1	시흥시 정왕동 849-10 인근	계획지구 외부	-
	GW - 2	시흥시 정왕동 782 인근	계획지구 외부	-
대기질	A - 1	시흥시 정왕동 876-285(충현교회) 인근	계획지구 내부 종교시설	-
	A - 2	시흥시 정왕신길로 216(정왕지구대) 인근	계획지구 남측 교육시설 주변	-
	A - 3	시흥시 정왕동 876-318 인근	계획지구 내 나지	-
약취	O - 1	시흥시 정왕동 876-285(충현교회) 인근	계획지구 내부 종교시설	-
	O - 2	시흥시 정왕신길로 216(정왕지구대) 인근	계획지구 남측 교육시설 주변	-
	O - 3	시흥시 정왕동 876-318 인근	계획지구 내 나지	-
토양	S - 1	시흥시 정왕동 876-64 인근	계획지구 내 나지	-
	S - 2	시흥시 정왕동 876-317 인근	계획지구 내 나지	-
	S - 3	시흥시 정왕동 876-324 인근	계획지구 내 나지	-
소음진동	NV - 1	시흥시 정왕신길로 139번길 24(성당) 인근	북측 지구 주변 종교시설	환경소음진동
	NV - 2	시흥시 정왕신길로 193 인근	남측 지구 주변 근린생활시설	환경소음진동
	NV - 3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 28 인근	동측 지구 주변 근린생활시설	환경소음진동
	NV - 4	시흥시 정왕신길로 166 인근	계획지구 내 근린생활시설	환경소음진동
철도소음진동	TN·TV-1	시흥시 역전로 302번길 8-1 인근	북측 지구 주변 노유자시설	철도소음진동
	TN·TV-2	시흥시 정왕신길로 139번길 24(성당) 인근	북측 지구 주변 종교시설	철도소음진동
	TN·TV-3	시흥시 정왕동 2144-2(정왕역앞 교차로) 인근	계획지구 내 도로	철도소음진동
위생공중보건	H - 1	시흥시 정왕동 876-285(충현교회) 인근	계획지구 내부 종교시설	-
	H - 2	시흥시 정왕신길로 216(정왕지구대) 인근	계획지구 남측 교육시설 주변	-
	H - 3	시흥시 정왕동 876-318 인근	계획지구 내 나지	-

주) 상기 조사항목별 조사 수량, 측정지점은 현장여건(각 지점별 전력 활용 여부, 측정거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그림 2-1 ) 환경질 조사계획(지표수질, 지하수질)



( 그림 2-2 ) 환경질 조사계획(대기질, 약취, 토양, 소음진동, 철도소음진동, 위생공중보건)

### 2.2.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계획임

< 표 2-12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실시근거

관련법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국토교통부) 또는 평가대상지역 관할 시·군·구(시흥시) 정보통신망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을 이용하여 14일 이상 공개할 것임

####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등의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 1)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 1회 이상

< 표 2-1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고 내용

구분	내용
공고내용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 의견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실시사실 게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관할 시·군·구(시흥시) 정보통신망(시흥시 홈페이지) 또는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국토교통부) 정보통신망
  - : 공고·공람 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 : 공고·공람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공람기간 : 20~40일 범위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미산입)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시흥시)의 의견을 들어 공람장소를 선정하고, 해당장소에 주민열람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비치
  - 공람장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함께 소정양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열람부’, ‘주민의견 제출서’ 를 비치할 것임
  - 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 현수막 설치,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 홍보를 계획함

## 2)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람기간 내에 실시하며,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은 평가대상지역 관할 지자체와 협의·결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 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할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하나의 시·군·구에서 개최할 수 있음
-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

## 3) 공청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거,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 설명회나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공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